

【 1 】 제34회의회(臨時會) 회기 결정의건

제의년월일 : 1995. 3. 27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34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회 기 : 1995. 4. 3(1일간)

【 2 】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지명의 발굴 및 변천과정등 조사, 보존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기능 지정 (안 제4조)

나. 지명조사의 범위 지정 (안 제7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의 제4항 및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음·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3 】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3. .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조례 제정으로 군사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후 군사의 보완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임무 지정 (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지정 (안 제3조)